◎ 인도 - 디지털세의 적용 대상에 대한 지침 발표

■ **인도 국세청은 2021년 5월 3일, 기업 등에 대한 디지털세 적용의 요건과 관련한 지침을 발표함[1)]**

○ 2022년 4월부터 인도에 사업장이 없지만 인도 고객으로부터 재정적 이익을 얻는 해외 법인은 디지털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됨

■ **해당 지침은 인도에서의 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정의함**

○ 거래액 기준으로 인도에 있는 사람과의 상품, 서비스 또는 재산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수익이 27만 1천달러[2)]를 초과하는 비거주자

-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 대한 거래가 포함됨

○ 사용자 기준으로 인도에서 30만명 이상의 사용자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모든 법인

■ **결과적으로 위의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시 인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간주함**

○ 이러한 사항은 조세조약이 맺어지지 않은 관할권에 해당하는 법인 중 SEP(Significant Economic Presence)[3)] 조항의 영향을 받는 법인만이 해당됨

- 조세조약은 비거주 법인이 인도에 고정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자료 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1) Bloomberg tax, "India Lays Out Rules Defining Economic Presence for Digital Tax", 2021. 5. 4., https://www.bloombergla 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ESUM0OG000000?bc=W1siU2VhcmNoIFJlc3VsdHMiLCIvcHJvZHVjdC90YXgvc2VhcmNoL3Jlc3VsdHMvYWUwNDA3OWY5YTVkOTNkNDk1M2EyMmZiNWQ2ZTZjODciXV0—a8073f285a6771 24a37d630a64ed6611ca80c410&bna_news_filter=daily-tax-report, 검색일자: 2021. 5. 13.
2) 2021년 5월 214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억 574만 2200원임.
3) '의미있는 경제 존재'라는 개념으로 온라인, 디지털 공간에서 운영되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과세하기 위해 2018년 인도 국내 세법에 도입됨. 인도에서 SEP를 보유한 비거주자는 인도에서 '비즈니스 연결'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SEP에 귀속되는 소득은 인도에서 과세됨(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